

## 붙임: 안내사항

### ○ 관련 시스템 구축시점

-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작업 중에 있습니다. 현재 시스템 개설 예정일은 '19.12.18일입니다.

### ○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

#### 1. '내수성' 기재 가능여부

☞ 내수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.

<사유>

- ▶ 내수성은 물과 땀에 의해 잘 지워지지 않는 정도를 말하므로 전체 구성성분과 그 함량이 상이할 경우 내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 제품에 추가할 경우 구성 성분과 함량이 변경되어 내수성의 동일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#### 3.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 pH항이 없는 경우 보고 가능여부

☞ 보고가 불가능합니다.

<사유>

- ▶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은 pH 기준만입니다.

#### 4.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pH항 시험방법이 상이한 경우

☞ 보고가 불가능합니다.

<사유>

- ▶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은 pH의 기준입니다. 또한 시험방법이 상이하어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.

## 5. 용법·용량

☞ 용법·용량은 고시품의 용법·용량인 “본 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.”로 고정되어 이외 내용은 기재가 어렵습니다.

- 다만,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의 용법·용량은 “본 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.”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## 6. 제형

☞ 제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‘액제, 로션제, 크림제’에 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‘에어로졸제’ 및 ‘쿠션’ 제품은 보고가 불가능합니다.  
끝.